

2024회 계 연 도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 원 회 소 관
결 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소 관
해 양 수 산 부 소 관
농 촌 진 흥 청 소 관
산 림 청 소 관
해 양 경 찰 청 소 관

2025. 9.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 원 회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소관부처 회부 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7) 양곡관리특별회계
-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9) 농지관리기금
- (1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11) 양곡증권정리기금
- (1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3) 축산발전기금
- (1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나. 해양수산부 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교통시설특별회계
-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 수산발전기금

다. 농촌진흥청 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라. 산림청 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마. 해양경찰청 소관

- (1) 일반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8. 26)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7.)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상정 · 심사 · 의결(원안의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9. 1.)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원안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총괄

□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세입 예산액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30조 2,101억원이며, 29조 1,27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7조 8,827억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1조 2,443억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지출) 결산과 관련하여, 총계 기준 22조 1,801억원이며, 집행 과정에서 전년도 이월액 6,727억원, 예비비 1,289억원 등 8,016억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2조 9,816억원임.

【 2024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7,312,657	16,639,958	16,606,963	2	32,993	△705,694
기 금	12,897,420	12,487,033	11,275,728	-	1,211,304	△1,621,692
총 계	30,210,077	29,126,991	27,882,691	2	1,244,297	△2,327,386

* 총계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2024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 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예산	22,180,051	672,693	128,900	228,544 △228,544	14,731 △14,731	-	22,981,644	20,707,110	1,785,621	488,913
기금	12,872,620	8,797	11,500	-	13,300	107,074 △107,074	12,906,217	11,275,728	22,688	985,565
총계	35,052,671	681,489	140,400	228,544 △228,544	28,031 △14,731	107,074 △107,074	35,887,861	31,982,838	1,808,309	1,474,477
총지 출**	18,339,237	500,450	70,200	228,544 △228,544	28,031 △14,731	107,074	19,030,261	17,746,158	829,403	454,700

* 총계 기준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기타증감: (예산) 내역변경, 세목변경, (기금) 공자기금 예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논농사에 비해 기계화율(67%)이 낮은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의 신체조건에 적합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에 대한 연구과제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R&D 성과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산 등
농업분야의 전략적인 R&D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농약 사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5차 계획의 이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제6차 계획 수립 시
친환경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체계 마련 등
제5차 계획의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셋째,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은
식품분야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유사한 창업지원 사업인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사업’과 2024년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는 기업이 7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복지원을
방지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관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개선·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넷째,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후계농자금의 대출 조건을 개선하는 등
창업자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변화에 상응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정책을 신뢰하고 영농 투자를 준비한 일부 청년농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한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후계농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정책추진과 예산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다섯째,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2024년 결성된 일부 자펀드의 결성액 대비 실제 투자액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 창업, 스마트농업 확대 등
본래의 정책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실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아울러 자펀드 청산 시 회수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기재부
협의를 거쳐 재출자되는 현행 구조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여섯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사형 광고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게재하거나
온라인 배너광고의 경우 단순히 기관 명칭과 로고만 노출하여

정책홍보 효과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기사형 광고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배너광고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를 전달하는
콘텐츠 중심의 광고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일곱째,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중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은 실행행률이 62.2%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추진에 다년간의 기간이 필요함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설계 및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방지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았음.

- 여덟째,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실행행률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의 누적 및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실행행률 제고를 위하여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아홉째,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내실있게 수립되지 못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사업추진방식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현액 10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화 사업에서 ISP·ISMP 수립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은 이월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열째, ‘자조금지원 사업’은 자조금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나, 일부 자조금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어 자체재원 이월금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등 보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단체의 자체재원 이월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열한째, ‘맞춤형농지지원(융자)’의 내역사업인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스마트팜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사전승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가 사업 예산을 승인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열두째, ‘말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는 동 사업의 보조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한편, 발매수득금 등 자체수입도 말산업 진흥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보조금과 마사회의 운영경비가 혼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고 성과 측정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운영경비 집행 전반을 점검하여 재원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동일 사업을 중복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해양수산부 소관>

1 총괄

-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 및 수산발전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2조 6,931억 5,700만원이며, 2조 8,421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7,786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622억 5,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7조 4,447억 4,500만원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세출예산현액은 7조 6,899억 4,800만원으로, 이 중 7조 1,459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2,001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38억 5,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4년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849,757	1,947,691	1,900,161	1,301	46,230	50,404
기 금	843,400	894,495	878,467	3	16,025	35,067
총 계	2,693,157	2,842,186	2,778,628	1,304	62,255	85,471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4년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예산	7,447,145	242,803	-	-	96,631 △96,631	7,689,948	7,145,946	200,150	343,852
기금	843,400	3,866	-	-	32 △32	847,266	878,467	16,133	168,864
총계	8,290,545	246,669	-	-	96,663 △96,663	8,537,214	8,024,413	216,283	512,716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2024년도 신규사업 중 미집행 사업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사업 중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31개 세부사업에 1,121억 4,000만원 규모로, 이 중 84.5%인 915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음.

신규로 추진된 사업 중 7개 세부사업의 13개 내역사업에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해양수산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예산 사업 추진 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중 실집행을 50% 미만 사업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총 1조 1,862억 2,800만원 규모의 60개 세부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실시하여,

이 중 96.2%인 1조 1,85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음.

피보조기관 실집행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음에도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사업은 ①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②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③ 광양항(3단계), ④ 물류기업 유치지원의 4개 사업이었으며,

이 중 ①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과 ④ 물류기업 유치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피보조기관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해양수산부는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에 따른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대규모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 집행 관리 및 이월 방지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행정기관인 선부(船府)를 재조명하여 해양영토 및 해양안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부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2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협의되지 않아 2023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이 불용되었음에도, 2024년 착공 예산이 편성되어 재차 불용된 점을 고려하면, 해양수산부는 대체부지 관련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넷째,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에 관한 사항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사업은 해상용 CBM+ 예지정비 시스템 및 고안전성 2차전지 국산 개발 및 해상 실증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방위사업청을 주관부처로 하여 해양수산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다부처사업인데,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방위사업청 “예산 미확보”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음.

해양수산부는 협업사업 추진 시 주관부처의 예산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다섯째,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내역사업인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사업,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사업, 선원인권보호 교육사업’은 선박관리산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규정에서 정하는 보조비목 및 세목별 산정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하였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보조금시스템의 등록을 누락하였음.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이 비목별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보조금시스템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여섯째,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에 관한 사항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62억 3,300만원 중 970억 2,200만원(91.3%)이 집행되었음.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소규모어가직불, 농업·임업 분야 직불 등 다른 직불제와 지원자격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직불금 규모가 다른 직불제 대비 낮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어선원직불제의 경우 예산산출 시 계획(1만 5,000명) 대비 신청자 수(7,502명)가 적게 나타났는데, 6개월 이상 승선 요건 등 신청 자격이 까다롭고, 특히 가족승선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제 지급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어선원직불제의 지급요건 또는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직불제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 일곱째, ‘부산항 사업’에 관한 사항

부산항 사업은 항만과 선박 보호를 위해 부산 북항 파제제 설치, 연구조사선 및 해경 소형선부두 확충, 외곽시설 안전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역사업 ‘북항 파제제 사업’(예산액 50억원)과 ‘연구조사선 부두 내역 사업’(예산액 30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미집행 사유는 사업구역 인근 주민들이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의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여덟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실태 조사, 해양생물 보전·복원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산하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99억 3,000만원 중 6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 사업은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중간단계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에 따른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 8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사업 또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촌진흥청 소관>

① 총괄

- 2024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입 예산은 152억 8,600만원이며, 169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56억 5,100만원이 수납되고, 12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출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1조 973억 7,4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55억 6,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029억 4,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1조 642억 4,600만원(96.5%)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09억 4,300만원(1.0%)과 불용액 277억 5,300만원(2.5%)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5,286	16,923	15,651	-	1,272	365
기 금	-	-	-	-	-	-
총 계	15,286	16,923	15,651	-	1,272	365

※ 자료: 농촌진흥청

【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 전용	기타 증감				
예산	1,097,374	5,568	-	-	8,811 △8,811	-	1,102,942	1,064,246	10,943	27,753
기금	-	-	-	-	-	-	-	-	-	-
총계	1,097,374	5,568	-	-	8,811 △8,811	-	1,102,942	1,064,246	10,943	27,753
총지출	1,097,374	5,568	-	-	8,811 △8,811	-	1,102,942	1,064,246	10,943	27,753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자료: 농촌진흥청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은 해외 로열티 지급규모가 큰 품목을
‘로열티 대응 품목’으로 지정하여 국산 품종의 개발을 통한
로열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 로열티
지급액은 증가하고, 국산 품종 보급률은 정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내내역사업인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은 국제적인 역량을 지닌
농업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농과계열 대학 졸업생 등을 KOPIA
센터로 파견하는 사업임. 그런데 최근 5년간 파견자의
취업통계에서 농식품분야 종사자는 평균 59%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비 농식품분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분야 취업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
사업을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셋째, ‘민간연구개발지원(R&D)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민간연구개발지원’은

농촌진흥청이 민간에서 개발한 농업 기술 등의 성능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의뢰 건수 또한 감소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의 운영 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민간에 명확히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넷째,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진흥기관에

관련 시설 및 기술을 지원·보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교부됐을 뿐만 아니라 실집행률 또한 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러한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실집행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산림청 소관>

① 총괄

-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입예산액은 1조 1,565억원이며, 1조 2,43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1,179억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1억원과 미수납액 1,240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 총수입 기준 세입예산액은 4,562억원이며, 5,32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073억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1억원과 미수납액 1,240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출예산액은 3조 5,804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3조 6,489억원이며, 이 중 3조 5,166억원을 집행하고 74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9억원을 불용하였고,
-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액은 2조 6,126억원이고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2조 6,812억원이며, 이 중 2조 5,689억원을 집행하고 74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8억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156,544	1,243,048	1,117,936	1,107	124,005	△38,608
기 금	-	-	-	-	-	-
총 계	1,156,544	1,243,048	1,117,936	1,107	124,005	△38,608
총수입	456,242	532,377	407,265	1,107	124,005	△48,977

※ 자료: 산림청

【 2024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 비	이·전용				
예산	3,580,363	67,798	786	-	42,273 △42,273	3,648,947	3,516,644	74,425	57,878
기금	-	-	-	-	-	-	-	-	-
총계	3,580,363	67,798	786	-	42,273 △42,273	3,648,947	3,516,644	74,425	57,878
총지출	2,612,591	67,798	786	-	42,273 △42,273	2,681,175	2,568,946	74,425	37,804

※ 주: 총지출 =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자료: 산림청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산림과학연구(R&D) 사업’에 관한 사항

동 사업 시험연구비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추진하는 7개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시험연구비 178억 6,700만원 중 2억 9,500만원을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관 행사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직원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및 교육 참석 여비,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기관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험연구비 통합 비목에 속하지 않는 관리용역비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시험연구비를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 규모를 제외한 실제 시험연구비 소요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 둘째,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도입·교체’는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725억원 중 72.9%인 528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151억 6,000만 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 45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음.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에 착수한 후 납품까지 4년이 소요됨에도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계함에 따라 예산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 사업기간을 4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동 예산의 약 20%를 집행하지 않고 긴급방제비에 전용하였는바, 산불의 신속한 진화 및 초동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셋째, ‘조림 사업’에 관한 사항

내역사업인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은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VR·AR을 활용한 첨단 산림사업 체험 및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실집행률이 50.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순연으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과 지하수 용출 및 내화인증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산림청은 향후 사업의 추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 넷째, ‘임도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동 사업은 임도를 확충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국산목재 공급 기반을 제공하고 산불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도 임도 전체 계약 건 중 87.3%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계약액 중 80.8%는 산림조합과 계약하면서 수의계약 비중은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던 바, 산림청은 향후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해양경찰청 소관>

① 총괄

-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은 62억 1,600만원이고, 182억 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57억 4,100만원(86.2%)이 수납되고 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으며, 25억 1,900만원(13.8%)은 미수납되었음.
- 세출예산 규모는 1조 8,966억 5,4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95억 5,9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은 1조 9,162억 1,300만원이고, 이 중 1조 8,971억 2,200만원(99.0%)이 집행되고, 102억 7,900만원(0.5%)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8억 1,200만원(0.5%)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수납증감 (B-A)
6,216	18,266	15,741	6	2,519	9,525

* 자료 : 해양경찰청

【 2024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예비비	이체	전용	이용	추경				
1,896,654	19,559	-	-	3,810	11,890	-	1,916,213	1,897,122	10,279	8,812
				△3,810	△11,890					

* 자료 : 해양경찰청
주) 총계 기준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에 관한 사항

내역사업인 ‘유도선현대화사업’은 노후 유·도선의 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자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6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억 8,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예산 불용의 주요 원인은 사업자가 신용도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보하지 못해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데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전담 금융기관 또는 특례보증기관과 연계한 신용검토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금융조달 가능성을 반영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경비대테러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내역사업인 ‘드론운용’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조난 선박 수색·구조, 해양오염 예찰 등 다목적 임무를 위해 드론을 도입·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양경찰청은 총 77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해양상황인식체계(MDA) 체계와 연동되지 못하고, 임무 유형별 표준화된 운용 절차가

부재하여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해양경찰청은 정보수집 항목과 형식을 정형화하고, 임무별 운용 절차와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조종사 부담 완화 및 관리 개선을 통해 드론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 셋째, ‘항공기정비유지 사업’에 관한 사항

내역사업인 ‘항공필수장비개선사업’에서는 CN-235 고정익 위성통신망과 AW-139 헬기 지상충돌경고장치(EGPWS) 장착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에 총 21억 9,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제작·납품 구조, 국내 대리점 공급체계, 인증 절차 등 외자조달 특수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실제 집행이 어려운 금액을 편성한 데에서 비롯되었음.

해양경찰청은 향후 외자성 장비 도입 시 조달구조, 납품 일정, 인증 절차 등 특수요인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사업의 실집행 부진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를 지양하는 등 보조사업의 실집행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기구분담금사업과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미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분담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내 부족액 발생 시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국제분담금 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68.9% 수준으로 저조하고, 전체 대상 중 10% 수준만을 대상으로 검진이 실시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과 검진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검진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검 대상자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후계농자

금의 대출 조건을 개선하는 등 창업자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변화에 상응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정책을 신뢰하고 영농 투자를 준비한 일부 청년농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후계농자금 이차보전 예산 등 청년농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유희 국·공유지 확보 및 임차 수요가 높은 부지의 매입단가 조정 등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전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밭농업 기계화’와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보급’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정책 과제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일선 농가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과제 수가 감소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소지가 있으므로,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임의 사용을 지양하는 한편, ‘공공배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 ‘비축지원’ 사업은 공공비축 시행계획 상 콩 비축 계획물량이 6만톤임에도 불구하고 콩 구매·비축 계획액을 2만 5,000톤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매대금 지급지연이 나타나는 한편, 추가적인 금융비용 22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매대금 지급지연 및 추가적인 금융비용 지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콩 구매·비축 계획액을 수급관리정책 상의 계획물량에 맞게 현실화할 것
- 시설농가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한시지원사업은 사업지급 기준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면세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하게 되어 2024년 예산 69억 7,2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가격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할 것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은 저탄소영농활동에 필요한 저메탄

사료가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 내 출시되지 못하면서 사업의 기본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분야 집행률은 0.5%에 불과하고, 젓소의 저메탄사료 급이 실적은 전무하므로, 향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이 기본여건 미비로 인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 소관>

- 집중호우로 인해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해양환경정화선 추가 건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해양수산부 지자체보조사업의 실행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외형적 집행률 뿐만 아니라 실행행률 관리 및 점검할 것
-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및 경제 손실을 해소하려는 어구 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집행률이 낮으므로 어민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률이 낮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수검률 제고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할 것
-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중단 장기화 문제로 선체 등 훼손이 심화되어 폐기처리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감을 갖고 신속 대응할 것
-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의 국가지원사업인 용수·배수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2028년

운영 예정인 묘도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신규 김 양식 면허의 대폭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물김의
폐기량이 늘고 있으므로 마른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필요
하며 김 가공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
- 해양수산부의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
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하여 직원들의 거주 문제,
전입·전출 등 인사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세심하게 배려할 것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극지활동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북극항로 관련 연구
용역 추진시 우리 고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

<농촌진흥청 소관>

- 농촌진흥청은 해외 로열티 지급규모가 큰 품목을 ‘로열티 대응 품목’으로 지정하여 국산품종의 개발을 통한 로열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로열티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산 품종 보급률은 정체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
- 민간연구 개발지원 사업의 실행행렬이 연례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의뢰 건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민간 수요 발굴을 위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신청을 촉진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산림청 소관>

- 산림청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유사 사업을 검토하여 산림청
사업을 보완할 것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중도포기로 관련
예산(인건비)이 매년 불용되고 있으므로, 중도포기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처우개선 할 것

<해양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은 매년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타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이·전용하고 있어 필수 현장활동 차질과 타 사업 집행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기준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할 것
- 해양경찰청은 연가보상비를 과다 편성·전용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급한도와 지급일수도 타 기관보다 낮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편성·집행하고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5. 소위심사보고의 요지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

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의 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7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2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정부가 임의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5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재이월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게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6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또한,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우수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산림청에 대해서는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외자장비 도입 시

사업의 특수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6. 심사결과

-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1)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79 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증 복)	합 계
농림축산식품부	-	-	-	4	53	-	57
해양수산부	-	-	6	9	45	-	60
농촌진흥청	-	-	-	3	11	-	14
산림청	-	-	-	7	29	-	36
해양경찰청	-	-	-	-	12	-	12
합계	0	0	6	23	150	-	179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보조사업 실적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 통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사업의 경우 농식품부 교부기준 집행률은 높은 데 반하여, 실제 사업수행 단계에서의 실적행률은 저조한 실정 - ' 24년 국고보조사업 254개 중 80%에 달하는 19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제 사업수행 단계에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은 43개에 불과 - ' 24년 실적행률 50% 미만 사업은 14건으로 집행 부진 발생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실적행이 부진한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적행 부진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를 지양하는 등 보조사업의 실적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세입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노력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특회계 내 모든 계정에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보다 다음 연도 세출예산 이월액이 더 큰 ‘세입재원 없는 이월’ 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사업 차질 등 우려 ○ 농특세계정의 결산상잉여금이 789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구조개선 사업계정 및 공익직불기금으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전출금을 집행한 문제 -구조개선사업계정 내 부족분인 4,967억원을 초과하는 전출금 6,089억원 이월 -공익직불기금 당초 여유자금운용 계획액 1,102억원을 초과하는 3,531억원 전출 ○ ‘ 24년 보조금 편성사업 중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천연물소재전주기 표준화허브구축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전액 또는 과다 교부된 문제 ○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농업시설개선, 다목적용수개발 등 대단위사업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외상공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의 지양, 타 회계 등으로의 전출규모 적정화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을 최소화 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외상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하며, 보조금 교부 상황을 고려하여 대단위사업의 공사를 시행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8010-8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수입농수산물 및 배합사료에 부과되어 징수되는 관세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의무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관세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품목별로 부과·징수되는 세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징수된 세액을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모두 전출하는 것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 ○ 또한, 법률상 수입농수산물의 범위에 농수산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일부 누락된 품목들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 대한 의무전출 규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대규모 토지취득 수반 지자체 지원사업 예산의 지분취득비 편성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국가의 자본보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각 시 국가가 그 지분을 회수하여 국가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닌 지분취득비(490목)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토지취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닌 지분취득비로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국제기구분담금 미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제기구분담금(ODA)(5031-531), 국제기구분담금(5031-5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국제기구분담금사업과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미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분담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내 부족액 발생 시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국제분담금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제기구분담금(5031-5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FAO 한국협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동 사업은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으로 ’09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납부해야할 ‘분담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 사업과는 성격 등이 상이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FAO 한국협회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 시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이 아닌 별도의 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편성할 것		
7	식량원조사업 성과평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제농업협력(ODA) (5031-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4년, ’25년에 걸쳐 식량원조 규모를 종전 대비 3배로 늘리면서 사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식량원조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사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평가를 실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8	연구용역의 연례적·반복적인 이월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업협상대응(5031-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등 농업협상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은 관행적인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24년은 10개 과제 중 6개(60%), ’23년은 8개 과제 중 7개(87.5%), ’22년은 7개 과제 중 4개 과제(57.1%)가 이월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연구용역 수요의 사전 발굴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진출국 다변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5032-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현재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은 전체 참여 기업의 56.9%(37개)가 캄보디아, 러시아 등 단 4개국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취약한 구조로 보임. 【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 관련 진출 기업 현황(2024. 12. 기준) 】 <table> <tr> <th>국가</th> <th>신고기업 (‘09~’24년 신고 누적)</th> <th>활동기업</th> <th>비 고</th> </tr> <tr> <td>합계</td> <td>117</td> <td>65</td> <td rowspan="5">37(56.9%)</td> </tr> <tr> <td>캄보디아</td> <td>46</td> <td>14</td> </tr> <tr> <td>러시아</td> <td>17</td> <td>9</td> </tr> <tr> <td>중국</td> <td>32</td> <td>7</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22</td> <td>7</td> </tr> </table>			국가	신고기업 (‘09~’24년 신고 누적)	활동기업	비 고	합계	117	65	37(56.9%)	캄보디아	46	14	러시아	17	9	중국	32	7	인도네시아	22	7
		국가	신고기업 (‘09~’24년 신고 누적)			활동기업	비 고																		
합계	117	65	37(56.9%)																						
캄보디아	46	14																							
러시아	17	9																							
중국	32	7																							
인도네시아	22	7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충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	제도개선	정부																				
		지적사항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사업내용이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매년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기금지출 혜택의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임. *광역시방자치단체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원액 비중 최고 14.9%에서 최저 1.6% 차이																						
		시정요구사항	○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확충을 위한 민간기업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지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기사형 광고의 개선 및 정책중심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7033-341)	제도개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게재하거나 온라인 배너광고의 경우 단순히 기관 명칭과 로고만 노출하여 정책홍보 효과가 미흡하였으며, 홍보비 등의 부적절한 비목 사용 등이 확인됨.		
		시정요구사항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의 투명성 및 식별성을 제고하고, 기관명 중심의 광고보다는 농정 관련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집행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		
1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4135-397)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예산의 실행률이 68.9% 수준으로 저조하고, 전체 대상 중 10%* 수준만을 대상으로 검진이 실시됨. * 51~70세 여성농업인 30만명(60만명×1/2(격년)) 중 3만 명(약 10%) 대상으로 실시 ○ 또한, 현행 검진 자격이 ‘51세~70세’ 인데, 70세 이상 농업인의 유병률이 높고, 유사사업(여성농업인 특화건강검진)은 51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므로, 71세 이상도 검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 유병률: 50~69세 5.6%, 70세 이상 8.0%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예산 실행률과 검진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검진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검 대상자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4160-43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 ※집행률: 2022년 41.0%, 2023년 60.1%, 2024년 69.1%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5년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할 것		
14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의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43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후계농자금의 대출 조건을 개선하는 등 창업자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변화에 상응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정책을 신뢰하고 영농 투자를 준비한 일부 청년농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한편, 청년창업농 선발인원 확대로 '24년 청년농의 임대 신청면적이 1만 2,471ha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제 지원 면적은 33% 수준인 4,108ha에 불과하였음. ○ 청년농에 대한 융자가 가능한 후계농자금과 귀농자금 중 후계농자금의 대출조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귀농자금을 대출받은 청년농들은 상환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후계농자금 이차보전 예산 등 청년농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유희 국·공유지 확보 및 임대 수요가 높은 부지의 매입단가 조정 등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전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경영이양직불(1070-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 24년 신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실집행률이 16.6%로 매우 저조하며, 약 정 체결 농지 면적도 목표 대비 35.4%에 불과함. - 이는 과도한 목표 설정 및 근거 법령 마련 등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 산 편성에 기인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농지확보 목표를 설 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률이 ' 20년 62.5%에서 ' 24년 41.5%(징수결정액 1조 7,964 억원 중 7,453억원 수납)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 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효과적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에서 ‘ 23년부터 전략매입지구를 지정하고 전략 매입지구 내 농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 24년의 경우 매입 목표량 1,300ha 중 369ha만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달성률이 28.4%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매입에 있어 전략매입지구 지정 및 집중매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농지매입 방안을 모색할 것		
18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와 다른 사업변경 재발 방지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사업의 지원대상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것과 다르게 청년농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부적절함. - 동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스마트팜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사업 추진이나 예산을 확대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FTA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최근 5년 FTA기금의 운용현황을 보면, 매년 지출이 자체수입을 초과하는 기금 수 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FTA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 는 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FTA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FTA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0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실투자 촉진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농식품모태펀드 출자(1151-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4년 출자금 550억원이 편성되어 4개 분야 5개 투자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펀드 결성일 이후 1년이 경과한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실투자금액이 스마트농업 3.7%, 영파머스 펀드 10.0%에 불과함.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서는 조합등록 후 1년 이내 25% 이상을 의무투 자하도록 기준 제시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업, 스마트농업 확대 등 본래의 정책목표를 적시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자펀드의 실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공익기능증진직불제 도의 다각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4년 기준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중 소농과 면적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직불제 사업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제 비중은 9%에 불과함. ○ 일부 이행 준수사항(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교육이수 등)은 이행점검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제도가 공익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R&D 사업 미환수액의 조속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구개발(R&D) 사업 공통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연구개발과제(R&D)에 대한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총액의 약 83.3%에 달하는 4억 9,40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음. 또한, 최근 3년간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환수처분은 15건인 반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2건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불성실한 과제 수행 등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제재부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발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구개발(R&D) 사업 공통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발농업 기계화'와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보급'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정책 과제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일선 농가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과제 수가 감소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고 있음. ※ (발농업기계화 연구과제 수) ’ 22년 12건 → ’ 23년 12건 → ’ 24년 5건 → ’ 25년 1건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연구과제 수) ’ 22년 1건 → ’ 23년 3건 → ’ 24년 1건 → ’ 25년 0건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발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보조금 관리 강화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이 부진하여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도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말(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음. ○ 또한,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69억 8,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27.9%의 낮은 실집행률에 그치는 등 만성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음. 【 2022~202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7">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교부 현액(A)</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B/A)</th></tr><tr><th>본예산</th><th>추경</th></tr><tr><td>2022</td><td>33,000</td><td>33,000</td><td>33,000</td><td>33,000</td><td>19,119</td><td>52,119</td><td>9,471</td><td>42,648</td><td>-</td><td>18.2%</td></tr><tr><td>2023</td><td>49,000</td><td>49,000</td><td>49,000</td><td>49,000</td><td>42,648</td><td>91,648</td><td>18,737</td><td>72,911</td><td>-</td><td>20.4%</td></tr><tr><td>2024</td><td>28,000</td><td>28,000</td><td>28,000</td><td>28,000</td><td>72,911</td><td>100,911</td><td>45,526</td><td>55,385</td><td>-</td><td>45.1%</td></tr><tr><td colspan="8">평 균</td><td>56,981</td><td>-</td><td>27.9%</td></tr></table>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33,000	33,000	33,000	33,000	19,119	52,119	9,471	42,648	-	18.2%	2023	49,000	49,000	49,000	49,000	42,648	91,648	18,737	72,911	-	20.4%	2024	28,000	28,000	28,000	28,000	72,911	100,911	45,526	55,385	-	45.1%	평 균								56,981	-	27.9%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33,000	33,000	33,000	33,000	19,119	52,119	9,471	42,648	-	18.2%																																																																									
2023	49,000	49,000	49,000	49,000	42,648	91,648	18,737	72,911	-	20.4%																																																																									
2024	28,000	28,000	28,000	28,000	72,911	100,911	45,526	55,385	-	45.1%																																																																									
평 균								56,981	-	27.9%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규모의 금액을 반영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이행실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2274-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 25년 10%까지 높일 계획이었던 ‘인증면적 비율’은 감소하여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농약 사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5차 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드론 농약 살포 등 외부위협으로부터 친환경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27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도시농업활성화(2250-384)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도시농업관리사는 ' 17년 제도 도입 이후 ' 25년 7월 현재까지 13,63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4년 행정조사('24.1.1~' 24.12.31) 결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는 1,407명으로 나타나 자격 취득자의 10%에 불과한 실정임. 【 도시농업관리사 취업현황(2024년 기준) 】 <table border="1"><tr><td>합계</td><td>서울</td><td>부산</td><td>대구</td><td>인천</td><td>대전</td><td>광주</td><td>울산</td><td>세종</td><td>경기</td><td>충남</td><td>전북</td><td>전남</td><td>경북</td><td>경남</td></tr><tr><td>1,407*</td><td>232</td><td>106</td><td>39</td><td>88</td><td>6</td><td>4</td><td>4</td><td>24</td><td>713</td><td>30</td><td>79</td><td>8</td><td>69</td><td>5</td></tr></table> * 조사기간('24.1.1 ~ '24.12.31)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407*	232	106	39	88	6	4	4	24	713	30	79	8	69	5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407*	232	106	39	88	6	4	4	24	713	30	79	8	69	5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식품기업 창업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은 식품분야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유사한 창업지원 사업인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사업’ 이 실시되고 있고, 2024년에 양 사업에서 중복지원 소지가 있는 기업이 7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복지원을 방지할 체계를 갖추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의 유관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개선·정비할 것		
29	K-미식 붐 활성화 사업의 유사사업 중복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2837-33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K-미식 붐 활성화’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간 중복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K-미식 붐 활성화 사업이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K-미식 붐 활성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2837-33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한 정보가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내에서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을 뿐 별도의 외국어 사이트는 개설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해외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해외의 잠재소비자에게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와 이에 따라 지정된 우수 한식당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1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사업효과 제고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푸드서비스선진화(2837-37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소지가 있음. *해당 내역사업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외식업체(1,850개소)의 경영 컨설팅,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4개소),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165개소)을 위하여 편성되었음. ○ 또한, 공공배달앱 홍보사업의 수혜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집중되는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투입의 효과성 저하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임의 사용을 지양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의 정책지원 편중구조 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851-34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식품가공원료매입(융자)’ 사업은 기존 수혜업체에 정책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고,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를 위반현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임. *2024년에 기존 수혜업체에 대한 지원율이 93.4%로 증가 **국산농산물 구매의무 위반 업체 2019~2023년 연평균 20개(6.7%)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가공원료매입(융자) 사업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여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관리를 강화할 것		
33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의 경쟁제한요인 점검 및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리시설개보수(4038-7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전체 수리시설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고시와 달리, 농업생산기반시설과의 관련성이 낮은 수리시설 실적을 30%만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경쟁제한 소지가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부당한 경쟁제한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부채액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양곡매입비(2131-36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에서 농협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액인 연산별 시장격리곡 매입 금액이 원금 기준 3.5조원 규모에 달하여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부채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공하는 등 적절한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35	APTERR 수원국 운영비 보조금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APTERR(ASEAN+3 비상 쌀 비축재,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수원국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19억 5,000만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하였으나,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APTERR 수원국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통한 이월 방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선제적 쌀 수급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비용을 집행하는 정보화사업으로, 당초 내실있게 수립되지 못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사업추진방식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 현액 10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에서 ISP·ISMP 수립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7	콩 구매·비축 계획액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공공비축 시행계획 상 콩 비축 계획물량이 6만톤임에도 불구하고 콩 구매·비축 계획액을 2만 5,000톤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매대금 지급지연이 나타나는 한편, 추가적인 금융비용 22억 7,400만원을 지출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매대금 지급지연 및 추가적인 금융비용 지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콩 구매·비축 계획액을 수급관리정책 상의 계획물량에 맞게 현실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수 미공급 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새만금지구개발(4043-33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내부개발’ 사업은 2024년에 농업용수 공급공사 발주 예산 5억원을 불용하였는데, 농업용수 미공급으로 인하여 농업특화단지 및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등 농생명용지 활용 사업의 운영이 저해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완료하고 농업용수 미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9	유가연동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시설농가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한시지원(3031-306)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지급 기준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면세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하게 되어 2024년 예산 69억 7,200만원을 전액 불용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유사한 유가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농식품바우처 카드의 취약계층 낙인효과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3041-38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현재 취약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 라는 표기가 있어, 카드 사용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인하여 취약계층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41	연례적 사업실적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의 중요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가입률이 19.2% 수준이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의 연례적 사업실적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집행실적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계획안을 편성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사업의 사업의무액 적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3033-30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 사업은 최초에 여신한도의 1,200%에 해당하는 농산물 의무구매액을 사업의무액으로 부여하였으나, 이를 미세조정하지 않고 2~3개월만에 1/2 수준인 600%로 급격히 완화하여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들의 여신 이용현황 및 사업의무 이행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무액을 적정규모로 재설정할 것		
43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보조)(3033-311, 3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사업비를 편성하며, 향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은 저탄소영농활동에 필요한 저메탄사료가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 내 출시되지 못하면서 사업의 기본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분야 실집행률은 0.5%에 불과하고, 젖소의 저메탄사료 급이 실적은 전무함. ○ 젖소용 저메탄사료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 미완료로 2025년에도 출시가 불투명하여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이 기본여건 미비로 인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45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지출 조정 검토 등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조사료생산기반확충(융자, 보조)(3735-315, 32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지원에 매년 800 ~ 9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사료 자급률 목표(2023, 2024년 82.4% → 2025년 80.9%)와 실적(2023년 82.4% → 2024년 79.0%)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사료 및 방목생태 융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사료 및 방목생태 융자 사업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지출 조정 등을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축산환경관리원의 계약 체결 법령 위반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3735-330)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축산환경관리원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청사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2024년 연구용역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형식상 연도별(2024, 2025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국고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이 계약 사무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47	말산업육성지원 사업과 마사회 운영경비 간 기능·역할 구분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말산업육성지원(3733-31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한국마사회는 동 사업의 보조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한편, 발매수득금 등 자체수입으로 말산업 진흥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이나, 보조금과 한국마사회의 운영경비가 혼용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성과 측정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 승마대회 지원, 생산농가 역량강화, 취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운영경비 중 약 4억원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운영경비 집행 전반을 점검하여 재원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동일 사업을 중복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농업기반시설활용에 너지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2230-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은 2023년도까지 출자금에 투입되고 '26년까지 투자금액이 전액 회수될 예정인데, 해당 사업은 추가 투자 여부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미수립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최근 재생에너지 시설의 고장으로 발전시설 가동중지로 인한 발전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리시설 유지보수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발전수익 일부가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채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동 사업을 통한 정부출자의 지속여부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동시에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적기 대처하여 고장으로 인한 장기간의 가동중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의 통합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기후변화 실태조사(2240-35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기후변화가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취약성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기관이 각각 농업·임업·용수에 대하여 조사하는데, 전문성 있는 조사 결과 도출이 예상되나 연계성이 부족하고 조사범위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조사 결과는 농업·농촌 기후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데, 현재 네이버 검색 플랫폼에서는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정보 시스템(구명칭)으로 검색되고 있어 혼동될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산림청 3개 기관의 통합 기후변화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결과가 등록되는 농업·농촌 기후변화정보시스템이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농식품기후변화대응 센터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2240-4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실증 및 인프라시설 임대, 기후변화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2023년 및 2024년에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함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총사업비: 594억원 - 2023년 예산현액 21억 3,500만원 중 9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4%) - 2024년 예산현액 30억 100만원 중 21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9%)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에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 공사비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도 공사비 예산의 일부가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동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편성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집행률·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3741-338)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024년도에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7,60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비 15억 8,400만원을 모두 불용하였으며, 교부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7,800만원의 경우에도 실집행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4.4%에 불과함 - 예산 편성시 기준으로 15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매년 평균 7개소에 불과하고 사업대상자별 평균 교부액은 5,200만원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이행점검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3741-338)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입양 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등록제를 안착시키는 것을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마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유실·유기동물 분양 및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 4년간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의 분양·기증률은 31.6%~39.5%로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분양·기증률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3741-347)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성과지표는 전문기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당해연도 지원 기업들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만족도’ 임. 동 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현 성과지표만으로는 동 사업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를 측정하기 어려움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신생산업이어서 반려동물 사료를 제외한 타 분야에 대한 통계가 없는바, 현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별 수출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임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펫푸드, 펫헬스케어(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펫보험 등), 펫서비스(돌봄, 교육·훈련, 장묘 등), 펫테크(자동화·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3740-3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역량강화 및 입양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영사업이 시작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19년~’ 24년에 동 사업은 55개소를 선정·지원하였는데, 이 중 12개소(21.8%)에 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 중단 - 2024년도에는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5곳 존재하고, 교부가 이루어진 16개 지역 중 실집행률이 50%를 초과한 지역은 단 두 곳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 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 강화,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 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가축질병 검사실(BL3) 신축’ 사업은 2024년도에 18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57억 9,800만원 중 실집행한 금액은 36억 500만원(실집행률 62.2%)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년도에 교부한 30억원을 2024년까지 재이월(28억 1,600만원)하여 사업을 완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에 교부한 12억원과 2024년에 교부한 18억원이 2025년도까지 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과 같은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방지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		

나. 해양수산부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신규사업 적기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공 통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 신규로 추진된 7개 세부사업의 13개 내역사업에서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 대부분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순연(7개 내역사업)이었으며, 그 외 지역주민 민원 등에 따른 사업 변경(2개 내역사업), 다부처 사업 중 주관부처 예산 미확보 또는 절대공기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반영하고,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의할 것		
2	보조사업 실적행률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공 통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66개 세부사업)의 부처 단계 집행률은 100.8%(이월액 포함)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적행률은 73.6%로 저조한 집행률은 사업의 실효성을 저평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60개 세부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음에도 실적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사업은 ①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②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③ 광양항(3단계), ④ 물류기업 유치지원의 4개임 - ①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과 ④ 물류기업 유치지원 사업의 경우 피보조기관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 실적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공 통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 회계연도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는 23건이 해당하는데, 집행부진 원인의 대부분은 계약 체결 지연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 지연, 지역주민 반대, 사업 수요부족 등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집행 점검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4	변상금 미수납에 대한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공 통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이 ' 22년 및 ' 23년에는 각각 1억 7,400만원, ' 24년 1억 2,8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2023년 변상금 미회수채권 건수 543건 중 채권 보전·회수 조치는 149건밖에 되지 않는 등 변상금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변상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등 19개 사업)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등 19개의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여, 시험연구비가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홍보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홍보 기념품 구입 등)가 있음 ※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등 19개 사업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업별로 필요한 비목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는 시험연구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만 집행하도록 할 것		
6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이후 준공금 지급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공간 통합관리(1031-305)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일반연구비 1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함 ○ 동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연내 준공금을 지급한 것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다른 연구용역 사업도 완료 전 준공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추진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이후 예산을 집행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찾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정원 조성(1031-30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해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임 * 예산 불용현황 : (' 22) 35.9억원 → (' 23) 21.5억원 → (' 24) 20억원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지연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경북 호미반도와 전남 여자만 사업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		
8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1033-32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전국 해역에 대하여 과학적·체계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해역의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해양방사성물질 측정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인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해양방사성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2023년부터 실시 중인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국고부담 개선을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1036-30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완료 후 준설 등을 통해 운영비를 자체충당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비 전액을 매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 부실로 연간 약 50억 원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여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10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간 불일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침몰선박관리(1036-306)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잔존유 확인 없이 잔존유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다른 문제가 있고, 특히 해양환경공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위해도 저감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잔존유 확인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존유 회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이에 맞추어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도록 사업방식을 개편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단가 부풀리기 및 보상 중복 청구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65-301)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하게 되면 정부에서 수거 실적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일부 지자체와 민간위탁업체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동일한 물량을 중복 청구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수거 실적을 검증하는 절차가 부실하고, 동일 해역·기간에 대해 사업이 중복집행되는 경우에도 걸러낼 시스템이 부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성과 관리가 단순히 ‘수거 물량’ 위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단가 부풀리기 및 중복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법적 집행 가능성 없는 사업추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로 2023년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에도 2024년도에 재차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적정 규모의 출연금 편성을 통한 인건비의 과다이월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의 해양박물관 및 해양과학관 지원 출연사업에서 지속 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인건비가 이월되고 있음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2031-312)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전남 완도) 관련하여 감리비 부족 및 총사업비 증액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관리 미흡이 반복 지적되고 있고, 2024년 실집행률은 0.2%에 불과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과 관련하여 설계·감리비 산정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16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 운영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2033-300)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용역의 평가위원 관련 규정은 외부위원 구성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입찰대상자가 위원 구성을 예측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며, 조달청 기준(정량 98점/정성 2점)에 비해 정량평가(96점) 대비 정성평가(4점)의 배점 비율이 높아 평가위원의 개입 여지가 다소 클 우려가 있음 ※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용역 개요 ■ 기술평가 근거 규정 :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예규) ■ 기술평가위원회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내부직원으로 구성(외부위원 규정 없음) ■ 평가위원 구성 : 추정가격의 고시금액 기준에 따라 3명(고시금액 미만)이상, 5명(10억 원 미만)이상, 7명(10억 원 이상)을 선정 ■ 평가점수 : 정량평가 96점, 정성평가 4점으로 구성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조달청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위원 요건 강화 및 평가항목 배점 비율 조정 등 기술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국고보조금 재이월 관련 부적정한 업무 처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관광육성(2034-310)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이월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부합하지 않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금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국고보조금 재이월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18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042-32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은 2022년에 시작되었으나 2023년 및 2024년에 건조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23년 2.3%, '24년 4.5%)하고, 사업 기간이 3년가량 연장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기간: (당초) 2022년~2026년 → (현재) 2022년~2029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추가적인 지연 없이 202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예산 편성시 부처간 면밀한 협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2046-34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신규사업으로 추진 되었으나,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의 사업 연기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 특정 부처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한 부처의 예산이 불용될 경 우, 당초 목표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와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 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다부처 사업추진 시 부처 간 협의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고 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관계부처의 예산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정과 협의를 거칠 것		
20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중단 장기화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어업지도관리(3132-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서해어업관리단이 발주한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이 입찰·계약 관련 소 송이 진행되고, 2022년 10월 법원의 공사중지명령 이후 공정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음 - 2025.7. 기준 전체 공정률은 50.8%(1호 63%, 2호 53%, 3호 35%) ○ 공사재개 시기가 지연될수록 선체 등 훼손이 심화되어 공사재개 가능성이 감소하고 폐 기처리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국고보조금 재이월 관련 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3431-301)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면세유 공급을 위해 단위수협에서 운영 중인 노후화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2023년 대상사업지 중 통영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에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다음연도로 재이월함 - 보조사업자인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재이월 승인한 6억 6,700만원을 초과한 8억 7,100만 원을 재이월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위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금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재)이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주요 정보통신시설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4249-52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 24년 해양수산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결과 총 1,175건의 취약점이 존재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없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 대응이 곤란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각 시설별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우선순위를 정하여 취약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할 것		
23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5067-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 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지연, 설계 변경에 따른 절차 순연 등으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한 바 있음 * 예산 이월현황 : (' 22)17,017백만원 → (' 23)7,151백만원 → (' 24)2,230백만원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사업 기간을 당초 2년(설계 1년, 공사 1년)에서 3년(설계 1.5년, 공사 1.5년)으로 조정한 만큼 향후 사업지부터는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목표한 2027년까지 모든 사업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보조금관리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6131-30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수행한 보조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반하여 비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중요재산 취득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3개 내역사업별 관리 미흡 내역 】 <table><tr><th>내역사업명</th><th>관리 미흡 사항</th></tr><tr><td>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td><td>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숙박업체 이용료 납부 ○ 일반수용비로 상해보험비 납부 </td></tr><tr><td>선박관리 전문가 양성</td><td> ○ 2022년부터 2024년 총 3년간 일반수용비로 보조인력 인건비(매년 약 7개월간) 지급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납부 </td></tr><tr><td>선원인권 보호교육</td><td> ○ 일반수용비로 노트북 구입 ○ 중요자산인 노트북 등 중요재산 공시 누락 </td></tr></table>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보조사업비는 지침 별표1과 같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자체 지급규정으로 집행하되,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			내역사업명	관리 미흡 사항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숙박업체 이용료 납부 ○ 일반수용비로 상해보험비 납부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 2022년부터 2024년 총 3년간 일반수용비로 보조인력 인건비(매년 약 7개월간) 지급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납부	선원인권 보호교육	○ 일반수용비로 노트북 구입 ○ 중요자산인 노트북 등 중요재산 공시 누락
		내역사업명	관리 미흡 사항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숙박업체 이용료 납부 ○ 일반수용비로 상해보험비 납부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 2022년부터 2024년 총 3년간 일반수용비로 보조인력 인건비(매년 약 7개월간) 지급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납부												
선원인권 보호교육	○ 일반수용비로 노트북 구입 ○ 중요자산인 노트북 등 중요재산 공시 누락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의 비목별 용도에 따른 집행 여부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보조금시스템의 등록 누락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원인별 대응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64명으로 전년 대비 70명(74.5%) 증가 - (' 23) 3,092 → (' 24) 3,255건(+163) / (인명피해) (' 23) 94 → (' 24) 164명(+70)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에 취약한 분야를 집중관리할 것		
26	소속기관 현원 확충 및 의원면직 등 조기퇴직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본부인건비 등(7001-1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부 인원은 정원보다 현 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반면, 소속기관은 상시적인 결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본부의 정원 대비 ‘초과’ 현원을 보면, ' 20년 39명, ' 21년 45명, ' 22년 63명, ' 23 년 64명, ' 24년 66명이고, 소속기관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 인원은 ' 20년 220명, ' 21년 238명, ' 22년 260명, ' 23년 242명, ' 24년 200명임 ○ 매년 자체 경력 채용 등을 통해 실무직원을 충원하고 있으나, 의원면직으로 인한 퇴직 인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충원 효과가 상쇄되는 실정임 ○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산 이전 결정으로 인해 직원의 이탈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본부 인원을 소속기관으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신규 채용·승진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재배치하는 등 소속기관의 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면직 사유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최소화 하고 이들이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평택해수청 재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본부인건비 등(7001-1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인데 다른 기관과 비교 및 평택항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이를 높일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평택항의 위상을 고려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위상을 강화할 것		
28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 및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 통(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세입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크게 발생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납률이 75.6%로 미수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함 * 농특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 : ('22) 192.5% → ('23) 427.9% → ('24) 158.5%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규모 : ('22) 110억원 → ('23) 193억원 → ('24) 163억원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미수납액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식품산업육성(2832-31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식품 수 출단지 조성(2832-30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해외시장개척(2837-3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3140-410), 수산물발전기금-수산물자조금지원(3065-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4년 4월 김 양식 신규 면허구역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물김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5년 1월 물김 가격 폭락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 ※ 2024년 해양수산부가 2,700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허가 - 물김 생산량은 2024년 1월 12만 1,142톤이었다가 2025년 1월에는 15만 2,203톤으로 증가 하고 이에 물김 가격은 2024년 1월 kg당 1,604원에서 2025년 1월 763원으로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 2024년 1월~5월 사이에 폐기된 물김은 54톤이었으나, 2025년 1월에만 5,989톤이 폐기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양식장 신규 면허 시 수급상황 및 가공처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면적을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양식장 면적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마른김 가공역량 확충 등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수산물 품질 안전 위한 어상자 전면교체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 물류환경 개선(3040-30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정부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플라스틱 어상자 721만개를 보급하였으나, 2024년 플라스틱 어상자는 총 647만개로, 74만개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플라스틱어상자 사용률(%)로, 2024년도 성과목표는 20.6%로 설정되었으나, 2022년 전체 어상자량과, 2023-2024년 플라스틱 어상자 예상 보급량을 고려하면, 목표치를 22%로 설정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성과 목표를 전년 전체 어상자량에서 당해 보급량을 합산한 비율로 조정하고, 플라스틱 어상자 전면교체 계획을 세울 것		
31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조속한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040-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수차례 중단·지연되어 준공시기가 최초계획 대비 10년 이상 지연(2018년 준공→2028년 이후 준공)되었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증가(약 1,729억원→2,360억원)하였음 - 국회는 4차례(19·20·22·23회계연도)에 걸쳐 동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주의 등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시공업체 설계보완 등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목표한 대로 올해 안에 착공함으로써 국회 시정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보조금법령」 취지에 부합한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3040-31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저온·친환경 위판장’ 내역사업은 전국 215개 노후 위판장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첫 해인 2023년에는 예산 6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전액 미집행 이월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현액 119억 4,000만원 중 95억 1,000만원을 교부하여 16억 1,700만원을 실집행(16.2%)하였음 - 사업장별로 지방비 미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 민원 대응 및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전체 편성 보조금 중 79.9%를 교부하였고, 대부분이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이력제(3041-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05년부터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물량의 비중은 13.9%에 불과해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한 상황 ※ 수산물이력제 사업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25.5.기준 참여 품목은 고등어·명태·멸치 등 총 78개 품목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생산자·유통판매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4	연도 중 사업 내용 확대·변경의 부적정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 위생관리(304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주기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관리를 받는 해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4년 예산액 40억 9,3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안심관리 마을에 대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였으며, 지정확인서 발급 관련 경비보다 홍보 및 소비촉진 관련 경비를 더 많이 집행 - 수산물 소비촉진의 경우 별도 세부사업인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사업’에서 이미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사업과의 중복가능성도 존재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동 환급행사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부정환급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부정환급 적발 건수는 2023년 50건, 2024년 35건, 2025년(5월말) 34건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수산물 상생할인지원)가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		
36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친환경양식어업 육성(3140-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일부 지자체 보조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행정 절차,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행행렬이 부진하게 나타남 - 실행행렬부진사업지(예):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전남) 29.8%,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제주) 33.2%,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구축(부산)사업은 0%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동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등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내수면자원조성(314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유희저수지 자원화사업은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저수지를 어류가 서식·산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강원 원주 반계저수지를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예산 전액(3.7억원) 불용 ○ 충남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첫 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시일이 소요되어 교부한 예산 전액(10억원) 이월 ○ 전북 김제 내수면창업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착수 첫해인 2024년도에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관련 예산(10억원) 전액 이월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예산 이월이 발생한 사업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감척사업 효과 상쇄요인 관리 및 저선령 어선 재활용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근해어선감척(3145-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최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예산(' 21, 1,249억원 → ' 24, 1,812억원) 및 감척 척수가 증가(' 21, 195척 → ' 24, 267척)에도 해당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수산자원량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생산량(톤): (' 20) 23.4 → (' 21) 23.8 → (' 22) 22.7 → (' 23) 24.5 → (' 24) 21.8(잠정) ** 수산자원량(만톤): (' 20) 340.5 → (' 21) 344.6 → (' 22) 337.9 → (' 23) 359.5 → (' 24) 추정중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연도별 감척목표 달성을 위해 내용 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저선령 어선까지 대규모로 폐기처리 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자산가치 손실을 가져옴 * 최근 5년간(' 20~' 24) 감척 어선은 5년 이하 선령의 어선이 7척, 6~10년 선령이 73척, 11~15년 124척, 16~20년이 197척으로, 내구연한인 20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감척한 어선이 401척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선마력수 증강, 불법조업 증가 등 동 사업의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들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선령 어선의 감척을 최소화하고 감척한 저선령 어선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어선중개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선거래제도 운영(3145-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 22·' 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전체 어선 거래 건수(5,802건) 대비 동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실적(14건)과 매물등록 건수(357건)가 저조함 ○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선중개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나, 어선중개업 제도 시행 이후 중개업 등록 건수는 줄어들고 휴·폐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어선중개업 제도 안착도 미흡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0	임차인의 수요를 고려한 양식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식장임대(3347-36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양식장임대 사업은 어촌사회 신규인력 유입을 위하여 양식장을 확보하여 귀어인 등에게 임대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계획했던 10개소에 대한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발생 - 사업참여를 희망한 양식장(임대인)이 61개소에 달하였음에도 이 중 42개소를 대상으로 미선정 - 16명의 임차 희망자 중 최종적으로 6명에 대해서는 상호간 조건 불일치 등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임차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 양식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다른 귀어·귀촌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임차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의 수검 실적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대상자 연령확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 2024년 수검 목표 인원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 - 예산집행률은 61.1%(실집행률 37.9%) 수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목표 대비 실제 수검인원('25.7월 기준)> (단위: 명, %) <table> <tr> <th>연도</th> <th>수검 목표 인원(A)</th> <th>실제 수검인원(B)</th> <th>수검률(B/A)</th> </tr> <tr> <td>2022년</td> <td>1,500</td> <td>552</td> <td>36.8</td> </tr> <tr> <td>2023년</td> <td>1,800</td> <td>674</td> <td>37.4</td> </tr> <tr> <td>2024년</td> <td>11,764</td> <td>1,350</td> <td>11.5</td> </tr> <tr> <td>2025년</td> <td>8,246</td> <td>320</td> <td>3.9</td> </tr> </table>						연도	수검 목표 인원(A)	실제 수검인원(B)	수검률(B/A)	2022년	1,500	552	36.8	2023년	1,800	674	37.4	2024년	11,764	1,350	11.5	2025년	8,246	320	3.9
		연도	수검 목표 인원(A)	실제 수검인원(B)	수검률(B/A)																							
2022년	1,500	552	36.8																									
2023년	1,800	674	37.4																									
2024년	11,764	1,350	11.5																									
2025년	8,246	320	3.9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의 수검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가격연동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3440-37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지급 기준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면세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070원/ℓ)을 하회하게 되어 2024년 예산 45억 700만원을 전액 불용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한 가격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 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할 것		
43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재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3440-37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지원대상 어가(1만 2,731개)의 15%에 불과한 2,103개 어가만이 최종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25.6.) 집행률이 50%(실집행률은 15%)로 저조하게 나타남 - 지원금액의 규모 및 지급방식이 어업인들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양식어업인 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단기적·한시적으로 논의되어 장기적 검토는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개별 어가의 실제 전력사용량에 비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체계를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고수온 피해양식장 재해보험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매년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양식수산물 피해액은 1,430억원에 이르고, 올해도 약 20만 마리 어류가 폐사 -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적 부가상품으로, 특약 가입시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고수온 특약 가입률은 전국 평균 10%대에 불과 -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전체 80종 중 30종에 불과하고, 보상요건도 ‘10년 평균 수온 대비 3℃ 초과, 10일 지속’ 등 과도하며, 실제로는 2.5℃ 상승만으로도 참복·전복 등 폐사 사례가 급증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민들의 고수온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확대, 고·저수온 특약을 주계약으로 포함, 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중(현재 50%) 확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		
45	경영이양 직불사업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 공익직불제(3460-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경영이양 직불 사업은 사업시작 첫 해인 2021년에 연간 수급인원 300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까지의 누적 수급인원은 36명에 불과하고 2024년 신규 수급인원도 6명에 그쳐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함 ※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은 ①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② 경영이양직불, ③ 수산자원보호직불,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로 구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 직불 사업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소규모어가·어선원직 불제의 실효행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공익직불제(3460-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지급하는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제의 경 우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하는 어가가 다수 발생하고, 최소 승선기준(6개월 이상) 미충족 어선원이 증가하여 불용액(62.3억원)이 과다하게 발생 -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의 경우 소규모어가직불, 농업·임업 분야 직불 등 다른 직불제와 지원자격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직불금 규모가 다른 직불제 대비 낮아 실효행률(* 23년 60.9%, * 24년 61.5%)이 저조 ※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은 ① 소규모어가직불, ② 어선원직불, ③ 조건불리지역직불로 다시 구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제 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급요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효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시험연구비 비목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편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계정)-연안국과의 협력(ODA)(6133-308)			시정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과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용역비를 시험연구비로 예산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ODA 사업의 조달수수료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등 경상적인 경비로 집행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발생함 【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시험연구비 부적절 예산 집행 내역 】 <table><tr><th>내역사업명</th><th colspan="3">예산 집행 내역</th></tr><tr><td rowspan="3">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td><td rowspan="3">시험연구비(210-13) (총 18,838,920원)</td><td>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1차년도 용역 조달수수료</td><td>7,225,700</td></tr><tr><td>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2차년도 용역 조달수수료</td><td>7,758,000</td></tr><tr><td>베트남ODA 사업 공동연구 현장 국외여비</td><td>3,855,220</td></tr><tr><td rowspan="3">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td><td rowspan="3">시험연구비(210-13) (총 71,237,250원)</td><td>국외 및 국내여비</td><td>17,517,309</td></tr><tr><td>사무(물품, 생수 등 소모품), 전산(토너), 기타 홍보물품, 신문구독료</td><td>17,638,820</td></tr><tr><td>ODA사업 조달수수료</td><td>13,250,900</td></tr></table>					내역사업명	예산 집행 내역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	시험연구비(210-13) (총 18,838,920원)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1차년도 용역 조달수수료	7,225,700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2차년도 용역 조달수수료	7,758,000	베트남ODA 사업 공동연구 현장 국외여비	3,855,220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	시험연구비(210-13) (총 71,237,250원)	국외 및 국내여비	17,517,309
내역사업명	예산 집행 내역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	시험연구비(210-13) (총 18,838,920원)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1차년도 용역 조달수수료	7,225,700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2차년도 용역 조달수수료	7,758,000																				
		베트남ODA 사업 공동연구 현장 국외여비	3,855,220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	시험연구비(210-13) (총 71,237,250원)	국외 및 국내여비	17,517,309																				
		사무(물품, 생수 등 소모품), 전산(토너), 기타 홍보물품, 신문구독료	17,638,820																				
		ODA사업 조달수수료	13,250,900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2025년 예산안 작성지침 - 시험연구비(210-13) 국가시험 연구기관(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를 위해 편성하는 비목으로,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고,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편성 지양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구입비, 조달수수료 등은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연구비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일반수용비와 국내·국외여비 등은 적절한 비목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시정할 것		
48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안국과의 협력(ODA)(6133-308)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해외 수산자원 확보 기여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2024년 신규로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사업 5건 중 2건의 추진이 지연되어 협의의사록 체결 및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연말에 이루어져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내역사업인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사업은 수원국의 조달방식 변경 및 사업 승인 지연으로 실집행단계에서 사업의 추진이 10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사업은 향후 사업추진의 추이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사업 의 추진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5050-31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수리조선단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서 사업방식 변경(BTO-a→BTO)에 따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제안 사업자가 선정되 지 못해 정부지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 (사업내용)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총 2,244억원을 투입하 여 방파제 880m와 도로 2,987m를 건설 - (집행현황) (2023년)25억 2,000만원, (2024년)8억원, (2025년)1억원(25. 8월기준) 전액 미집행 ○ 국가가 민간제안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책임성 있게 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는 점 을 감안하여,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민간사업제안자 등 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해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정상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포항영일만신항 사업의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조사비 집행 부적절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포항영일만신항(5050-322)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축조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경제성검토 용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면적 5천㎡ 이상)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420-01)가 편성되지 않아 실시설계비(420-02)에서 1억 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 -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으로 인해 설계경제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시설계 및 공사 등 후속조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설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관련 항목을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 소형선부두 이전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기능의 도입을 위해 소형선부두 축조(180m), 어항방파제 증고(140m), 배후부지 정비 등을 실시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 후에 전용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의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조사비 집행 부적절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포항영일만신항(1단계)(5050-323)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은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경우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설계보상비는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집행되어야 하나, 설계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지 않아, 공사비에서 30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함 -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입찰 참여기업이 보상비를 늦게 받게 되어 업체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 입찰 참여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보상비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안 작성 지침의 취지에 반함 - (사업내용) 국제여객부두 및 해경부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남방파제(2단계, 1.3km)를 축조하는 사업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 후에 전용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부산항 사업 사업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항(5058-307)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북항 파제제 사업(예산액 50억원)과 연구조사선 부두 사업(예산액 30억원)은 2022년도에 설계에 착수하였으나, 사업구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항만시설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로 사업 집행이 부진하게 되어 2024년도 예산액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 북항 파제제 사업은 예산액 50억원 중 21억 5,9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23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4억 6,000만원은 불용하였고, 연구조사선 부두 사업은 예산액 30억원 중 29억 8,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2,000만원 불용 ○ 2024년도 두 내역사업 예산 80억 원 중 64.2%인 51억 3,900만 원을 다른 내역사업 또는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액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 (사업내용) 「북항 파제제 사업」: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공선 대체 계류지 조성 및 파제제(방파용 구조물) 건설 「연구조사선 부두 사업」: 해양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에 관한 연구·과학·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선 전용부두(285m) 확충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회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관리 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기타항만 재개발(5061-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가까이 지연된 상황으로, 묘도 재개발 본공사의 일부 상부시설이 2028년에 운영 개시할 예정이므로 본공사 준공 이전에 정부재정 사업의 완료가 필요함 - (사업내용)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내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설치 묘도 재개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 사업구역 내 발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묘도 재개발 본공사 준공 이전에 정부재정 사업인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것		
54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무역항(부산항·인천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2024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이후 조달청에 공사 발주 요청('24.11)을 하였으나 유사사례가 없어 조달청 내부 검토 등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집행률이 11.1%로 저조함 - 2024년 예산액 32억 4,600만원 중 실시설계비 3억 6,200만원은 집행하고, 공사비 27억 4,000만원은 전액 이월(집행률 11.1%)되었으며, 인천항의 경우 사업자 선정은 2025년 8월, 부산항·울산항의 경우 2025년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예정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준비 및 검토 등을 충분히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예산 전용을 통한 연도말 자산취득비 집행 및 이월 부적절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24. 12. 20. 운영개시)에 따라 필요한 보안장비(X-RAY 검색대 8대) 구매를 위해 9억 4,400만원을 2024년 10월 전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9억 600만원)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이 곤란한 예산을 전용하고 전용예산 대부분을 이월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시설 및 장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연간 단위의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56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실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신활력증진(330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3년 시작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7년까지 5년간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약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3년(실집행률 42.0%)에 이어 2024년에도 지자체 실집행이 56.9%로 저조 - 2023년과 2024년에 선정한 사업지(98개) 중 66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설계 착수 사업지는 28개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어촌뉴딜300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뉴딜300(3301-304)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19년부터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 재생을 도모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지별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나, 2024년말 기준 85개 사업지의 공정률이 저조하여 2025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어촌·어항 300개소, 총사업비 약 3조원 투입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공정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한 시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58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 정화(1065-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구보증금제 운영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민간보조사업자로서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 영을 담당하고, 실제 반납어구 수거·처리, 반납장소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실시 - 반납장소 부족으로 인한 운영 미흡(계획 184개소 대비 실제 85개소 운영)과 어구 반납수 요 저조로 인한 수매비용 등 미집행 등 사유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19억 9,800만원 중 2억 4,800만원만이 실집행(12.4%)되어 실제 어구의 수거·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폐어구 회수처리 예산을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한 어구에 대한 반납장소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국립해양생물 중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1065-304)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국립해양생물중복원센터 건립사업이 총사업비 협의 등 실시절계 지연으로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32억 3,4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중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건립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건축공사 추진 시에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60	융자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3465-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들이 융자 신청 후 수산장비 구입을 미루다가 뒤늦게 융자를 포기하여 이후 신규 신청자를 찾지 못해 융자 실행기간 부족으로 융자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신청자 중 담보 부족으로 융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융자신청인원 대비 포기 인원이 상당히 많고, 매년 융자실행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수요를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융자 신청부터 실제 장비 구매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다. 농촌진흥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고객현장지원 사업예산 일반회계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고객현장지원(7136-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고객현장지원 사업의 예산은 민원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일반회계성 예산이고, 사업분류코드 또한 행정지원 프로그램(7100)에 해당하여 농촌진흥청 기관 고유업무에 속함.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향후 고객 현장지원 사업 예산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		
2	전문연구원제도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농업과학기술연구(1131-300), 작물시험연구(1132-300), 원예특작시험연구((1231-300), 축산시험연구(1232-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국립농업과학원 등 3개 소속기관의 전문연구원 중도퇴직률이 21%~26%에 달하는 등 이탈이 심각한데, 이는 연구 중단, 사업 지연 등 R&D 사업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소속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전문연구원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 조사 및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전문연구원의 처우 개선 및 경력관리 지원 등 인력 유지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퇴직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산품종 보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신품종지역적응연구(R&D)(1133-302)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은 해외 로열티 지급규모가 큰 품목을 로열티 대응 품목으로 지정하여 국산품종의 개발을 통한 로열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로열티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산 품종 보급률은 정체되는 등 사업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우수 국산 품종 개발·보급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																																																																
4	민간연구 개발지원 사업 신청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민간연구개발지원(R&D)(1148-65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실행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의뢰 건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민간 수요 발굴을 위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민간연구개발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산 현액(A)</th><th rowspan="2">집행액(B) [실집행액]</th><th rowspan="2">집행률 (B/A)</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tr><th>본예산</th><th>추경</th></tr><tr><td>2021</td><td>78</td><td>78</td><td>-</td><td>-</td><td>78</td><td>12[12]</td><td>15.5%</td><td>-</td><td>66</td></tr><tr><td>2022</td><td>78</td><td>78</td><td>-</td><td>-</td><td>78</td><td>14[14]</td><td>17.9%</td><td>-</td><td>64</td></tr><tr><td>2023</td><td>78</td><td>78</td><td>-</td><td>-</td><td>78</td><td>2[2]</td><td>2.6%</td><td>-</td><td>76</td></tr><tr><td>2024</td><td>33</td><td>33</td><td>-</td><td>-</td><td>33</td><td>23[23]</td><td>69.7%</td><td>-</td><td>10</td></tr><tr><td>2025. 8.</td><td>25</td><td>25</td><td>-</td><td>-</td><td>-</td><td>-</td><td>0%</td><td>-</td><td>-</td></tr></table> (민간의뢰 건수) ' 20년 12건 → ' 21년 8건 → ' 22년 4건 → ' 23년 1건 → ' 24년 1건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B) [실집행액]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78	78	-	-	78	12[12]	15.5%	-	66	2022	78	78	-	-	78	14[14]	17.9%	-	64	2023	78	78	-	-	78	2[2]	2.6%	-	76	2024	33	33	-	-	33	23[23]	69.7%	-	10	2025. 8.	25	25	-	-	-	-	0%	-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B) [실집행액]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78	78	-	-	78	12[12]	15.5%	-	66																																																										
2022	78	78	-	-	78	14[14]	17.9%	-	64																																																										
2023	78	78	-	-	78	2[2]	2.6%	-	76																																																										
2024	33	33	-	-	33	23[23]	69.7%	-	10																																																										
2025. 8.	25	25	-	-	-	-	0%	-	-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신청을 촉진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성과 초과달성 사업에 대한 별도 보상제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R&D)(1133-414)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은 저탄소그린라이스 생산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인 신규 육종소재 개발 ' 23년 목표치(1개)를 초과달성(3개) 하였으나, 해당 연구진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의 연구진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1136-330) 지군회계-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2233-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했다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향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7	농업공공기술진흥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1136-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최근에 민간이전된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이전과 이후 기간이 경과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 측정방식 등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2231-301)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농작물 재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병해충 저감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원대상 작목의 범위가 일부에 한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의 사업실시 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파쇄지원 대상품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작업가능 범위가 넓은 파쇄기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9	보조금 관련 지침 준수 및 실집행을 제고를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지역자율)(2233-300)				주의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은 실집행이 부진하여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도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말(11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음. ○ 동사업의 집행 부진 정도가 단순 반복을 넘어 고착화, 심화됨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2022 ~ 2024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실집행을 부진 원인 분석을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동사업 연수생의 취업통계에서 농식품분야 종사자는 평균 59%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비 농식품분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 사업 연수생에 대한 취업현황 조사 시 미응답 비율이 ' 20년 17.9%에서 ' 24년 40%로 급증하는 등 기본적인 성과 추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연수생 선발 시 사후 현황조사 통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1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이 ' 24년에 수행한 33개 ODA 사업 중 일부인 9개(27%) 사업에 대하여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추진되어 농촌진흥청의 기술개발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프라 지원이 결합될 때 발휘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상당 수의 ODA 사업에서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현재 일부에 그치는 부처 간 협력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 간 협력 및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2	ODA 사업의 민간역량 활용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KOPIA 센터 소장 총 20명 중 16명(80%)이 전직 농촌진흥청 공무원인 반면, 민간 전문가는 1명(5%)에 불과하고, ' 24년에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ODA 사업 중 민간과의 공동수행 사업은 없어 민간 농업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향후 KOPIA 소장 선발 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조직 내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분야 역량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ODA 사업의 외교부 사업과의 중복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	주의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ODA는 외교부(KOICA)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 방법, 지원대상 기관, 대상 국가 등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DA 사업의 방향성 및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		
14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1232-305)	주의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 21년부터 추진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주민반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실시설계와 공사가 전혀 착수되지 못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수년간 관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농촌진흥청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라. 산림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주요 세입 미수납액 관련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 2024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 징수·수납 현황을 보면, 1조 2,430억 4,800만원 징수결정하여, 1,240억 500만원을 미수납함 - 기타경상이전수입 과목 수납률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미수납액 발생으로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각각 65.0%, 83.7%로 하락함 - 법정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액 및 장기채납자가 다수 존재함 - 국유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연례적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하며, 변상금의 법률이행효과가 미흡함 - 농특회계(임업진흥계정)에서 숲가꾸기 및 조림 등에서 세입 채원 없는 이월 발생함	주의	산림청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부담금 장기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처분 등을 적극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수납 규모를 줄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에 대한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무단점유 방지의 효과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세입 재원 없는 이월 문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지적사항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9,269억 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9,183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85억 3,300만원이며, 이에 따라 총 이월액 466억 9,200만원에서 결산잉여금 85억 3,300만원을 차감한 ‘세입 재원 없는 이월액’은 381억 5,900만원으로 나타남 -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은 세입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할 다음연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에 우선 집행하게 되어 당해연도 사업비 부족으로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현상이 연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주의	산림청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산림조성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 주요 세입원을 중심으로 수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4년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은 65.0%이며, 미수납액은 15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7,600만원 대비 89억 2,300만원 증가하여 증가율은 13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농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은 83.7%이며, 미수납액은 53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105억 800만원 대비 51억 1,5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2년도 16억 9,800만원보다는 36억 9,5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미수납액의 발생으로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과목의 수납률이 각각 65.0%, 83.7%로 2022년도 대비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집행부진 사업 점검 및 실행률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목재산업육성(1535-3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인재해복구 긴급지원(1538-305)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실행행률 50% 미만 사업은 2건(목재산업육성, 임업인재해복구 긴급지원)으로 242억 7,0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 - 목재산업육성: 예산현액 32,264백만원, 실행액 10,303백만원 - 임업인재해복구 긴급지원: 예산현액 2,588백만원, 실행액 279백만원 ○ 집행부진 원인은 대부분 계약 체결 지연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했다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보다 면밀하게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의 실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및 세목조정 관련 내부지침 마련 필요	지적사항	○ 산림청은 2024년도에 총 59개 세부사업에서 935건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137억 3,4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세목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상위 3개 사업에서 전체 세목조정 건수의 30.1%(지방산림청 기본경비 사업, 산불방지대책 사업, 임도시설(지원)), 전체 세목조정 금액의 40.7%(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가 나타나는 등 일부 세부사업에서의 과도한 세목조정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림청은 세목조정과 관련하여 내부지침이 부재하여, 세부사업의 소관 실·국마다 상이한 절차에 따라 세목을 조정하는 등 세목조정 관련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획조정관실 등 일부 실·국의 경우 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의 세부사업에서 별도의 내부 결재 과정 없이 세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목조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게 함	제도개선	산림청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매년 상당규모의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비의 비목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례적이고 과다한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세목조정이 내부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외교부 ODA사업과의 차별화 및 연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제산림협력(1331-300) 일반회계-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ODA)(1331-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세부내역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분담금’ 및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사업’은 개도국 산림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ODA사업이었음에도 그동안 비ODA사업으로 분류되어, ODA사업으로써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사업추진실적·성과 등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산림청의 주요 사업은 토지황폐화·사막화 방지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생산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소득향상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교육 등인데, 이러한 사업내용들은 외교부(KOICA)가 수행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분담금’ 및 ‘한국형산림녹화프로그램확산’ 사업의 내용상 ODA 사업으로 편성·집행되었어야 하므로, 비ODA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동 세부내역들을 ODA사업으로 이관하고,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일부 사업은 사전협의·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ODA 사업을 수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변상금 부과를 통한 무단점유지 발생 차단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변상금(57-571)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2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1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1억 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3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3.2%로 나타남 ○ 일반회계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수단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하고 무단점유지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변상금의 법률 이행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무단점유지의 원상복구 추진 원칙 아래 변상금에 대한 채권관리를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함으로써 변상금 부과가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 미수납 채권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구간별로 채권관리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채권회수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무단점유 우려지역 등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점유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과학연구(R&D)(1251-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4년도에 편성된 시험연구비 178억 6,700만원 중 2억 9,500만원을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 행사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직원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및 교육 참석 여비,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기관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험연구비 통합 비목에 속하지 않는 관리용역비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 ○ 이는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를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요구를 받았던 사항임에도 여전히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시험연구비 집행의 사전 검토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내부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 규모를 제외한 실제 시험연구비 소요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이를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관련 소송 및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사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2024년 설계 공모에 미당선된 업체에서 ‘당선자 결정 무효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일부 패소하고, ‘설계 용역 등 기타 일체의 후속 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2025년 8월 현재 동 설계 계약은 진행률 84% 수준에서 후속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본안에 대한 항소 및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사업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와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조림(1534-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K-포레스트관건립 사업’은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VR·AR을 활용한 첨단 산림사업 체험 및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실적집행률이 50.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적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순연으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 지하수 용출 및 내화인증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K-포레스트관건립 추진 과정에서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목재산업육성 내역사업 구조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목재산업육성(1535-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산목재 활용촉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친화도시 조성, 산림목재 클러스터조성 등 목재산업 활성화 관련 세부 내역사업들의 실행행률이 저조함 - 내역사업 실행행률: (' 21년) 40.6%, (' 22년) 34.1%, (' 23년) 35.4%, (' 24년) 31.9% ○ 내역사업들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진행이 저조하고, 사업내용 및 사업목적 등이 유사하며 차별성이 크지 않은 실정으로, 사업 종료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역사업들을 통폐합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목재산업육성’ 내역사업 중 일부는 연례적으로 실행 실적 저조하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목재산업 육성 사업의 실행을 저조 및 보조금 관련 지침 위반 부적절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목재산업육성(1535-30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목재산업 육성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목재 에너지림 조성 등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히 고려 없이 보조금 전액을 일시 교부하여 상당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실행이 부진함 - 실행행률: 국산목재 활용촉진 사업(29.8%),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15.5%, 이월액 제외 시 0%),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1.2%)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최소 연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3개 보조사업의 지자체 교부금을 일시에 전액 교부하여 지침을 위배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연 2회 이상 나누어서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의 부적정한 통합 집행행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목재이용증진(1535-304) 일반회계-목재제품 품질관리(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서 서로 다른 회계 및 세부사업에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함께 집행되고 있음 -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이를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임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두 사업 예산을 통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강화 및 이행점검 항목 재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1538-306)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0~80%로 저조함 - 2022년 65.2%, 2023년 70.5%, 2024년 81.5% ○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추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행항목 준수율이 99.6%이고, 미준수 건수가 많은 항목이 산지형상 유지(3건)가 아닌, 대부분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미이수(189건)이며, 부정수급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농식품부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준수사항위반 1%,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항목 위반행위 가장 많음, 고위험군 대상 10.7% 부정수급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이행점검 항목을 합리화하여 동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기능인양성(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 및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의 최근 3년간 임업기계장비 활용률은 평균 46.5%에 머물러 있으며, 임업기계장비 1대당 사용일수는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4년 기준 36.6일(1개월에 3일 정도 사용 수준)에 불과해 연중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임 ○ 2021년부터 국유림관리소 등에 도입되고 있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경우에도 2024년 기준 평균 가동률은 23.8%에 불과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계장비 홍보와 정기적인 운용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 수요와 활용빈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상시운용인력 현황 등을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구입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기능인양성(1540-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국유림임업기계장비보급’의 2024년도 예산현액 82억 3,900만원 중 29.3%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러한 집행 부진 및 이월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이월액 규모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월액 중 상당 규모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의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비가 당해연도에 계약 및 선급 지급이 이루어지고 장비 수령 및 잔금 지급은 다음 연도에 완료되고 있음 ○ 또한, 도입 장비의 계약 시점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장비 수령 시기는 계약부터 최소 5개월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경우 계약에서 도입까지 2년이 소요됨에도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임도시설의 과도한 수의계약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자율)(1537-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지원)(1536-3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제주)(1537-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세종)(1536-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도 임도 전체 계약 건 중 87.3%(산림청 발주 기준 93.4%)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계약액 중 80.8%는 산림조합과 계약하면서 수의계약 비중은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도 발표(* 25.5월)됨 -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비중은 평균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조합과는 평균 96.8%를 수의계약하는 등 임도 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향후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임도의 산불 방지 효과 측정 기준안 등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자율)(1537-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지원)(1536-3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제주)(1537-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세종)(1536-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2023년말 기준 25,848km(임도밀도 4.1m/ha)를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충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2024년에 「국립공원 재난관리를 위한 임도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임도가 산불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임도 확충에 앞서 임도의 산불 진화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임도 확충·정비 시 산불 확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임도의 산불 방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자체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보조금 편성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반영·차감하는 수지차보전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자체수입예산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 결산 잉여금: (' 24년) 21억 6,300만원, (' 23년) 22억 9,400만원, (' 22년) 3억 8,500만원 ○ 매년 시설 운영 환경과 기준이 변화함에도 단순히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고 있는 현재의 자체수입 산출 방식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음 ○ 산림복지진흥원은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잉여금을 다시 해당 시설 운영 등의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사실상 다음 해의 예산이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해당 금액만큼 국비가 과다 지원되었음을 의미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복지진흥원의 자체수입예산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시설별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추산을 통해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 연례적 미수납 문제 해결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금 종류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함 - 징수결정액은 2022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고, 수납률은 2020년 83.1%에서 2024년 75.4%로 감소하는 추세 ○ 특히, 납기도래 미수납액 중 비중이 높은 고액 채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10억원 이상의 경우, 미납건수는 10건인데 비해 금액으로는 145억 6,900만원으로 전체 채납액 중 37.9%의 비중을 차지, 건당 평균 채납액이 14억 5,700만원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부담금 장기간 미납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등을 적극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해 미수납 규모를 줄여 나갈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산림환경기능증진자 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등 필요	지적사항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은 「산림자원법」 제5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함 ○ 녹색자금은 그 수입 및 지출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및 국회 재정통제가 어려움 -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자금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됨	주의	산림청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2	일반회계와 산림환경기능증진자 금으로 각각 추진되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차별성 제고 필요	지적사항	○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통해 녹색인프라확충사업에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 산림교육치유허성화 사업 내 산림치유허성화 내역사업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주의	산림청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및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간 사업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집행 가능성 없는 일·숙직비 예산 편성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1118-2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일·숙직비(210-06목)는 국립수목원의 일직 및 숙직근무자에게 일·숙직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립수목원은 2024년도 예산액 700만원 전액을 세목조정 및 이용하였음 - 국립수목원은 2019년 이후 연례적으로 일·숙직비를 이·전용하거나 불용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국립수목원에서 재택당직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토·일요일 사무실 일직 근무도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일·숙직비 지급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숙직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이 없는 일·숙직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여 타 사업에 집행하거나 불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백두대간보전(1933-30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의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하고,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에도 유사 사업이 있는데 산림청은 간접지원 성격이고 환경부는 직접지원 성격이므로 환경부 사업을 검토해서 산림청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예산액 4,947백만원, 실집행액 2,137백만원(실집행률 43%) - 백두대간 주민지원: 예산액 4,154백만원, 실집행액 3,627백만원(실집행률 87%) -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환경부 생태계지불제와 유사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유사 사업을 고려하여 산림청 사업을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의 내역사업 재분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생물다양성증진(1934-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림생물자원관리, 산림보호 예방·단속 등을 통해 산림의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사업과 연관 없는 내역사업: 국립산지생태원조성, 수목원교육프로그램선발 및 교육지원, 국가표준식물종관리프로그램 운영, 수목원 미래인재양성사업,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에 속해 있는 내역사업의 개수가 과다하고 내역사업 간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 및 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해 내역사업을 재분류하여 개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사업 및 산림보호단속선운영 사업의 저조한 성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생물다양성증진(1934-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사업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산림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동 위원회는 단 8회 개최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피해지역의 안정적 식생 도입여부 판단을 위한 식생적응력 조사사업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 내역사업인 ‘산림보호단속선운영’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3개 선박의 총 운행현황은 68건으로 월평균 5.7회, 선박당 월 1.9회에 불과하며, 단속실적 또한 2021~2023년은 전무하고 2024년은 1건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석포제련소주변 산림복원 사업 관련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예산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동 제련소의 산림훼손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보호단속선운영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 및 성과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진화 역량 제고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통합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재해일자리(2331-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내 험준한 산악지역 산불진화를 주로 수행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인건비가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내 중·저지대 산불 및 잔불 진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진화작업시에는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선발 및 채용 기간 내에 체력검증을 실시하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대다수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산불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진화 역량을 제고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산불 대응 지휘 체계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불 진화 업무의 중요성 및 생명과 관련된 안전사고발생 우려,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산불재난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통합운영하는 등 산불대응 지휘체계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의 연내 착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은 공중진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수송기(C-130)에 탑재할 진화용 이동식 물탱크 1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0억원을 전액 미집행함 -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협의 실패로 추진하지 못하였음 - 해당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에 80억원이 재반영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군 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비가 2025년도에는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신속한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 예산의 불용액은 약 20억원으로, 불용 사유는 진화대원의 중도포기로 인한 잔여 인건비가 대부분임 - 3년 동안 중도포기 인원은 108명이며 최근 3년간 불용액은 약 60억원임 - 중도포기 사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수당으로 4만원을 지급받는데,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직원들은 재난업무수당 8만원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향후 초대형산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례적 지적사항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노후 산불감시카메라의 신속한 교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17개 시·도 및 지방산림청, 과학원 등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는 총 1,446대로 내내역사업인 ‘노후 감시카메라 교체’ 사업을 통하여 노후 산불감시카메라에 대한 교체 및 유지보수를 행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기준 1,446개의 산불감시카메라 중 10년 이상 노후 산불감시카메라는 131개로 9.1%에 달하며 2022년 90대에서 45% 증가한 수치임. 노후로 인한 오작동·미작동 사례 역시 2022년 299건에서 2024년 368건으로 23%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초대형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산불감시카메라를 신속하게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산림재해드론활용 사업의 과도한 미집행액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림재해드론활용’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감시 및 효율적인 야간산불 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1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5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1,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2024년도 예산액의 미집행액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재해드론활용 사업의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동 사업의 2024년도 미집행액이 과도하게 나타났으므로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산불위험지관리 사업과 유사사업 간의 일원화 추진 검토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불위험지관리’ 사업은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파쇄기를 지원하고 위험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6억 6,700만원을 전액 교부하고 이 중 5억 3,100만원을 실집행하였음 ○ 한편,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과 유사한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은 불법소각 근절을 통한 미세먼지·병해충 저감 및 산불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배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불위험지관리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산림인접 영농지 구분이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장비 운영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부처 간 사업 일원화 추진을 검토하고, 산불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도입·교체’는 효율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725억원 중 72.9%인 528억 3,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현재 산림헬기 1대당 사업기간은 3년이지만, 실제로는 산림헬기 계약 체결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되고 이후 납품까지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임.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3차년도 예산의 일부에 대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의 착수부터 납품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차년도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예산의 타 사업 전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7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1%에 해당하는 151억 6,000만원을 산림재해대책비(2331-300)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산림헬기는 도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국회도 추경을 통해 추가 도입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타 사업을 위하여 상당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불의 신속한 진화 및 초동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집행방식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국산헬기 도입의 적극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운영의 주요 세부내역 사업인 산림헬기도입·교체, 외주정비, 항공보험 등의 재원을 타사업으로 이·전용 또는 타 목적으로 세목변경하였음 - 산림헬기도입·교체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21%인 151억 6,000만원, 외주정비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59%인 80억 800만원, 항공보험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59%인 31억 7,400만원 ○ 이는 금년 경북·경남·울산 산불(2025.3.21.~3.30.)과 같이 대형화되는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사전준비대책이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산 헬기 기종의 부품수급 및 정비를 위한 계약 및 조달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해 헬기의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헬기도입·교체, 외주정비 및 항공보험 예산을 타사업 또는 타목적으로 과다하게 이·전용하거나 세목변경하여 산불방지대책의 마련 및 준비가 미흡했으므로, 국산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헬기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산불대응체계 통합지휘 관련 표준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 정부의 산불대응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운영될 예정임 ○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와 재난관리주관기관 체계가 병행되는 가운데, 산불 규모에 따라 통합지휘권자가 달라지는 구조임	제도개선	산림청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지휘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도록 산불 규모별 지휘전환 기준, 현장 통합지휘 본부 설치·운영 표준, 관계기관 역할분담을 정비한 새로운 통합지휘 표준안을 마련할 것		

마. 해양경찰청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 비목 적정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공 통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 현안과 연계된 과제가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집행되었고, 정책 연구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되지 않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공백이 발생하였음. - 「수중레저 안전관리 방안 연구」, 「퇴역예정 경비함정의 장비실습함 활용 방안」 등 정책 현안 관련 5건이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반복적·기술적 성격의 과제는 일반 연구비(260-01)로, 정책개발 목적의 과제는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연구는 연구결과를 정책연구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도록 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구용역비 편성 단계에서 과제의 성격과 정책 연계성을 검토하여, 일반연구와 정책연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연구 과제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성과 공개를 강화할 것		
2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3001-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연안안전지킴이운영 사업은 짧은 활동 시간, 적은 배치장소, 한정된 장비 등의 제약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 24년 기준) 전국 연안위험구역은 총 81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연안안전지킴이가 배치된 장소는 97개소에 불과함 - (최근 5년) 전체 연안사고의 약 45%가 12~18시에 발생했으나 현행 근무체계는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특성과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지킴이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배치장소를 단계적으로 늘려 제도의 내실화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대형헬기 (5호기) 사업의 추가적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기도입사업(3101-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도입 사업은 2023년부터 유찰이 반복되면서 계약이 지연되어, 도입 완료 시기가 당초 계획인 2026년보다 약 2년 늦은 2028년으로 연기되었음. ○ 신규 도입되는 AW-189 헬기는 기존 기종과 상이하여 장기간 별도 교육이 필요하므로 조종인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존 보유 기종(S-92)과 상이한 AW-189 헬기를 신규 도입함에 따라 조종사들이 6개월 ~1년간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대형헬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종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4	드론의 MDA 연계 강화를 위한 운용체계 정비 및 직무교육 이수자 우선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드론운용 사업’은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하여 2024년 1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기존 직무교육 이수자 중 35.8%가 드론 운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직무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드론 운용은 임무별 표준 절차 부재와 운용시간 감소로 인해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음. - 야간 조난 탐지, 연안 침입 감시, 해양오염 예찰 등 임무별 표준 운용 절차가 없어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미흡함. - 무인헬기는 1대당 평균 운용시간이 2023년 37시간에서 2024년 17시간으로, 무인비행기는 2023년 3시간에서 2024년 2시간으로 줄어 활용도가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무인기의 임무별 표준 운용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제도의 성과보상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제도는 보상 수준이 낮고 성과지표가 정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단속 현장의 기여도와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포상금 집행액은 2만원 내외에 불과하여 고위험·고강도 작전 환경에 비해 보상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성과지표인 ‘나포척수/검문검색건수 비율’ 지표는 단속의 질적 요소나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선박의 위반 유형과 나포 환경을 나포포상금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포상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6	불용예산액의 목적 외 사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특공대활동지원사업’은 불용예산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티드론건 1대를 구입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문제가 있음. - 2024년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에서 드론탐지기 도입 예산 8,300만원 중 4,800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예산액과 대테러장비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안티드론건 1대(4,350만원)를 구입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향후 장비 도입 과정에서 불용액을 활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마약범죄 수사자문위원회 내실화 및 예산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수사활동(3102-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국제컨퍼런스 행사 예산을 확대 집행하고 자문위원회를 축소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였음. -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는 당초 예산 3,880만원 대비 2.1배인 총 8,250만원을 집행하였음. -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당초 예산 5,000만원 중 640만원(12.8%)만 집행하고 나머지 4,360만원은 세목조정을 통해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하여 사용됨. ○ 해양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행사성 운영에 치중하여 본래 목적에 따른 심층 자문과 정책적 논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음. - 2023년 제1회 위원회는 환영사·성과발표·위촉장 수여 등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2024년에도 상반기 1회만 개최된 후 나머지 예산은 국제컨퍼런스 경비로 전용되었음. * 「해양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응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현재 국내 13명과 국외 10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해양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가 본래 취지대로 해양 마약수사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외자장비 도입 시 조달 특수성 반영과 집행계획 수립 통한 이월·불용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기정비유지(3103-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외자장비의 제작·공급 구조와 계약 가능 주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불용 사례가 발생하였음. - CN-235 고정익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은 21억 5,500만원이 이월되고, 5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AW-139 헬기 지상충돌경고장치 도입 사업은 4,100만원이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외자장비 도입 시 사업의 특수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방지할 것		
9	반복적인 인건비 이·전용 방지를 위한 구조적 편성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관서인건비(7201-1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지방관서 인건비가 부족하여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2024년에도 치안 및 외근활동지원, 총무활동 등 타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여 보수(110-01목) 189억 2,100만원을 충당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예산 편성 당국과 협의하여 계급별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연가보상비 지급한도 적정수준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관서인건비(7201-1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후 보수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음. - 2022년 예산 55억6,600만원 중 55억5,400만원을 전용·조정하여 집행액은 거의 없었으며, 2023년은 59억2,300만원 중 43억500만원을 전용·조정하여 집행률 27.3%, 2024년은 60억 6,200만원 중 34억3,500만원을 전용·조정하여 집행률 43.3%로 나타났음. ○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소방청에 비해 연가 지급한도 및 지급일수가 연례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가보상비 지급한도(최대 지급일수)는 경찰청이 7~8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이 0~4일로 경찰청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적었음. - 직원 1인당 평균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또한 경찰청이 3.2~3.9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이 0~1.8일로 가장 적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연가보상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미지급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연가보상비의 지급한도와 지급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11	공공요금및제세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 등 국회시정요구사항 준수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관서기본경비(7202-25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지방관서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부족 예산을 충당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타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등을 통해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으로 증액한 금액이 2022년 19억 8,400만원, 2023년 33억 5,000만원, 2024년 31억 5,600만원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이·전용을 최소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해양경찰청 정보화 사업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7238-300), 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7238-301),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7238-302)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 인사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였음. ○ 개별 정보시스템마다 유지보수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유지보수비 지출이 증가하고 신속한 장애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정보화사업 담당 인력은 직렬, 경력, 자격보유 측면에서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경찰청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철저히 수립하고, 정보화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며, 유지보수비는 정보화사업예산으로 전환할 것		

(3) 부대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사업효과 및 적정 배분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치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기준을 설정할 때 발아율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가입수요에 부합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와의 규제 개선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전까지 가공용 쌀 추가공급대책을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 대여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우려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의 수요확대를 통해 재배면적을 유지·확대하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김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김치 원산지 위반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서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체계 및 성과지표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극심한 논콩 수해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혜택이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업자가 아닌 국민 및 농민에게 귀착되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산 사과 수입 시 국내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과정에서의 위생 검역절차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책임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충실히 검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제도 시행의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삼천포수협위판장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반공사 및 위판장 현대화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지자체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양환경정화선 추가 건조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김가격 안정을 위한 마른김 가공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여수웅천 마리나 사업 및 안산방아머리 사업은 향후 지방비 확보,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조속히 완료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적극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집하장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 발표될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 해양수산부는 현행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금 산정방안을 개선한다.

다.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일부 부서의 수원 이전 중단 결정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 성장 기조에 부합되는 적절한 정책결정이라는 점에 유념하여 현재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 관련 부서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 산림청

- 해당사항 없음

마.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 중 한 곳으로 활용되어 치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를 분서하여 고흥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해양경찰청은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 사업에서 기본계획과 실제 도입 대수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가능성과 사업 여건 등 실현가능성을 반영한다.